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02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서천호 · 김선교 · 김민전
최보운 · 박덕흠 · 이만희
임종득 · 김용태 · 조은희
우재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빈집의 매입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거주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불균형 심화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빈집 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인해 현행법상 매입 방식만으로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 소유자와 임대, 협약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65

조의7 신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7(빈집의 재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빈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개축·수리를 하여 주거, 사무실, 농장, 공동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빈집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빈집의 재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재생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빈집의 재생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빈집을 재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생 방안을 제안받아 빈집을 재생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재생하는 자에게 빈집의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빈집의 재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5조의7(빈집의 재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인 재생(빈집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개축·수리를 하여 주거, 사무실, 농장, 공동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② 빈집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빈집의 재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빈집 재생 여부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빈집의 재생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빈집을 재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빈집의 재생 방안을 제안받아</u>

빈집을 재생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재생하는 자에게 빈집의 개축·수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빈집의 재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